－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뜨워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

○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10,000원으로 조정(안 13조의 별표 2)

- 종전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

○ 도의원 및 교육위원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조치

☐ 검토 의견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11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법 개정당시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110,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